

재판 공개의 빛과 그림자: 대법원 변론 영상과 초상권 침해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1. 사건의 시작: 유명 가수의 ‘그림 대작(代作)’과 매니저

한 유명 가수 B가 화가로서 명성을 얻으며 그의 그림이 고가에 팔려나가던 때, 미술계와 대중은 그의 예술적 재능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숨겨진 조력자, 즉 무명 화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B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작품의 거의 모든 부분을 대신 그려주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도운 매니저 A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고단51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확정)

매니저 A는 B의 지시에 따라 조수 화가들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작품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 1심은 A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구매자들이 작가의 명성, 소재의 독창성, 투자가

치 등 다양한 이유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며, ‘친작(親作)’ 여부는 여러 고려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어서,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과정은 “미술 작품의 ‘작가’는 누구이며, 어디까지를 ‘창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2. 또 다른 법정 분쟁: 초상권 침해를 다룬 국가배상 소송으로 전환

매니저 A는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술의 본질을 다투던 형사소송이, 재판공개와 초상권 보호의 균형을 묻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소송은 재판 공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질문을 던졌다.

가. 제1심 및 제2심: “실시간 중계는 OK, 동영상 게시는 위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48698 판결 항소기각

1심 법원은 재판 영상의 ‘실시간 중계’와 ‘사후 동영상 게시’를 분리하여 그 위법성을 달리 판단했다.

먼저, 실시간 중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실시간 중계의 기술적 특성상 즉각적인 초상권 보호조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영상 게시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재판의 공익적 가치와는 별개로, 매니저 A는 공적 인물이 아니며 그의 얼굴을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해야 할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최소한의 초상권 보호 조치 없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국가가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의 일반 직무집행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제3심: 원심 파기, ‘재판상 직무행위’라는 새로운 관점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대상을 ‘담당 공무원의 변론 영상 게시 행위’가 아닌, ‘재판장의 변론 영상 게시 결정’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변론 영상의 중계 및 게시 결정이 재판장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그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형사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공적 특성을 가진 사건이었고, A씨 역시 방송 출연 및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스스로를 알려왔으며, 공개변론 내용이 A씨의 사생활과 무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재판장이 영상 게시를 명령한 것이 현저하게 기준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의 게시 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 재판에서 공개성은 사법의 영혼

현대에는 재판 공개가 당연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재판이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때도 있었다. 1487년 헨리 7세가 만든 성실재판소(Star Chamber)는 대표적인 비밀 법정이었다. 처음에는 속도와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탄압과 권력 남용 도구로 변질되었다. 재판의 결과는 권력자들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재판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비판할 수도 없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문도 허용되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재판절차는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왕권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국 1641년 성실재판소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절대적이고 불가침의 원칙으로 확립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제러미 벤담은 “공개성은 바로 사법의 영혼이다. 재판공개원칙은 부조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비”라고 하였다.¹⁾ 재판 공개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¹⁾ 사법정책연구원, (202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03), p.144, 참조

이러한 재판공개원칙은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09조에서는 제도보장으로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27조 단서에서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판의 공개는 국민이 국가의 사법작용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 곧 알권리(헌법 제21조)의 실현이기도 하다. 국민이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사법은 비로소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공공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재판공개 원칙은 오늘날 제도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일반인은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양형기준제도의 운영, 판결서 공개의 확대 등은 모두 이 원칙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 재판공개 그림자

다만 문제는 실제 재판이 단순한 법적 논쟁의 공간을 넘어, 한 개인의 삶과 명예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라는 부분에 있다. 재판공개 가치가 언제나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할 수 있을까.

영국의 법관 앳킨슨 경(Lord Atkinson)은 재판공개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양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사건의 공개심리는 당사자와 증인 모두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거나 꺼려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특별히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너무나 불결하여 공중도덕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개재판은 무고한 자들에 대해 가장 좋은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권의 행사를 담보하며, 공중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감수하고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²⁾ 재판에서 부끄러운 일이 다뤄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영광과 환호가 시상대에 쏟아진다면, 재판정은 그 반대로 인생의 그림자가 모이는 곳에 가깝다. 재판공개원칙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그럼에도 “법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공적 재산(public property)’이고 (중략)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가 개인적인 것이라도 법정에 현출되면 비밀성을 잃고 공적인 것으로서 공중의 접근 대상이 된다”³⁾라고 본다. 즉, 재판으로 나아가는 순간 개인적인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 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2) 사법정책연구원. (202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03), p.145. 참조

3) 사법정책연구원. (202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03), p.197. 참조



재판공개 원칙은 더할 나위 없이 보편타당하다. 하지만 재판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초상권 포함, 헌법 제10조)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재판공개 원칙이 정의의 빛을 비추는 동시에, 때로는 인간의 존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역설을 보여준다. 특히 재판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영구적으로 게시되고 무한히 복제·전파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격권 침해의 위험과 피해의 심각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5. 법정의 문이 열릴 때, 닫혀야 할 얼굴들

재판공개 원칙과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문제는 결국 두 가치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먼저 현행법은 재판 공개의 공익성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실제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건, 예컨대 소년사건은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며(「소년법」 제24조 제2항), 가정폭력사건도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이러한 조항들은 재판공개와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도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재판 변론 중계방송의 쟁점은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자이크 처리 등 공개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안에 가까웠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법정 방청을 허용하지만,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9조). 이는 재판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무분별한 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중계하거나, 그 녹화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방어권 보호, 법정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허가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3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론 영상의 게시가 재판장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법관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재판장의 명령에 어떤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파기되었다.

이 판결은 재판공개와 공익성과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판장이 ‘현저한 남용’을 하지 않는 한 재판 공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사실상 면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상이 디지털 환경에서 영구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크다. 언론 보도에서도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등)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낀다.

물론 법관의 재량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재판공개와 가치가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소송관계인의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음성 변조 등)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신원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결국 재판은 법의 언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는 인간의 고통, 명예, 존엄이 함께 존재한다. 재판의 공공성과 개인의 존엄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의 과제이며, 정의의 빛이 누군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